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8. 5. 24.(목)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 ‘마’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18-25(서)-330)

- 제도개선 반영 및 별지서식 정비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 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2018-25(서)-3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씨엠비 계열 11개 SO 대상 시설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18-25(서)-332)

-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외국회사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정비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및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라.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2018-17(서)-333~335)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 및 「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4항2호	1,200만원
(주)엠비씨플러스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500만원
(주)아이에이치큐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마.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2018-17(서)-336~342)

- 「방송법」 제74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주)문화방송 등 7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문화방송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1,500만원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제2호	1,400만원
원주문화방송(주)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1호	350만원
(주)스카이라이프티브이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350만원
(주)한국낚시방송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제1호	350만원
(주)기독교텔레비전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주)머니투데이방송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350만원